

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해설

국립환경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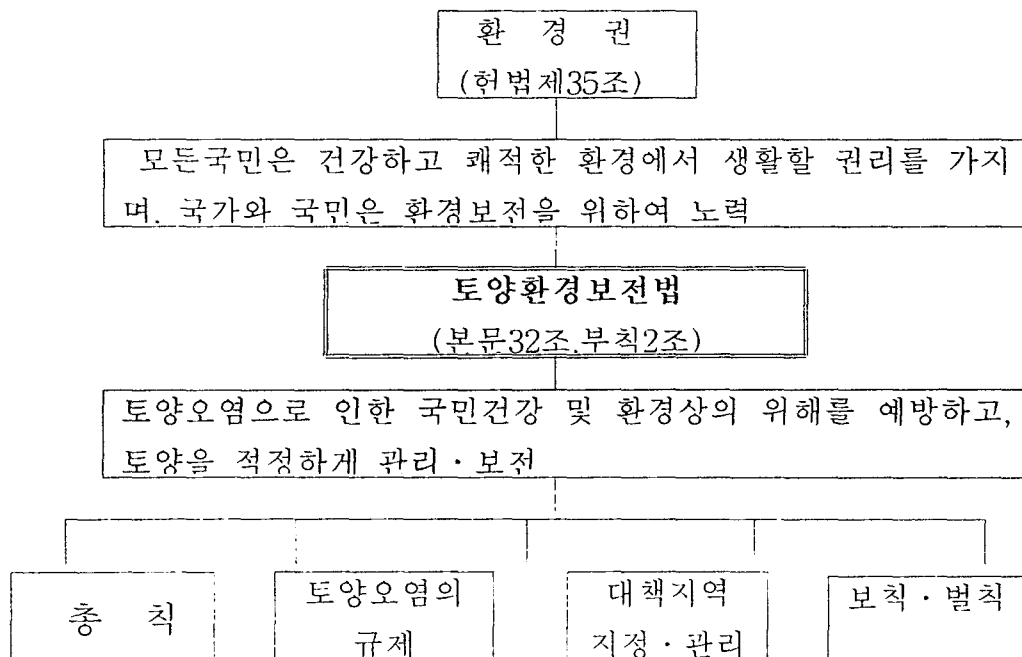
토양환경과장 이민효

제 1장 토양환경보전법

1. 목적

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함

2. 구성 체계



- 목 적 - 토양오염유 - 대책지역 - 대집행
- 토양보전 발 시설신고 지정 - 국고보조
- 기본계획 - 설 치 자 에 - 대책계획 - 벌칙
- 오염도 측정 대한 명령 수립시행 - 과태료
- 공정시험법 - 방지조치명 - 오염토양 등 9개조
- 등 10개조 령등 5개조 개선사업 등 8개조

3. 토양환경 관리체계

□ 토양환경관리

- 오염물질관리는 확산과 심화등을 방지하는 사전관리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등 사후관리
- 오염원관리는 오염의 개연성이 높고 위해가 심한 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시설을 토양오염유발시설로, 비지정오염원은 토양측정망에 포함하여 일반관리
- 오염판단기준은 토양오염대책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구분설정
 - 대상지역은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
-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 부담,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무과실책임원칙 적용

○ 토양오염유발시설

종 류	대 상 범 위
1.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	○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중 제 1·제2·제3·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를 제조·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
2.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	○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물제조업·판매업·취급업의 등록을 한 업체에서 설치한 저장시설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

○ 토양측정망 운영개선

구 분	전 국 망	지 역 망
목 적	전국의 토양오염개황 파악	지역중심으로 오염진행상황 파악
설치지점	토지용도별 지역	토양오염원
주 관	환경부	지방자치단체(시·도)

○ 토양오염기준

- 토양오염물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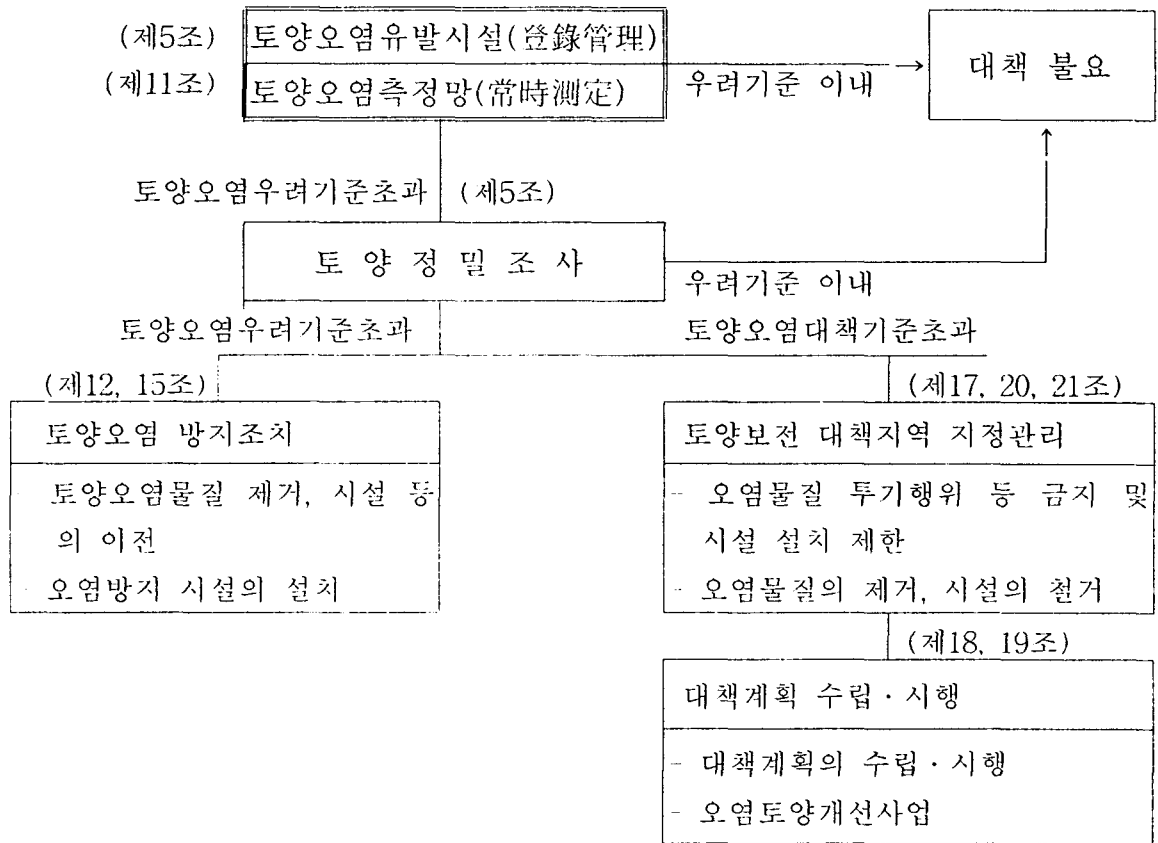
토양중에서 분해하지않고 오래동안 잔류하는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, 사람의 건강에 좋지않는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류, 유류, PCBs등 11항목을 토양오염물질로 규정

(단위:mg/kg)

오 염 물 질	토양오염 우려기준		토양오염 대책기준	
	가지역	나지역	가지역	나지역
카드뮴	1.5	12	4	30
구 리	50	200	125	500
비 소	6	20	15	50
수 은	4	16	10	40
납	100	400	300	1,000
6가크롬	4	12	10	30
유기인화합물	10	30	-	-
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	-	12	-	30
시 안	2	120	5	300
페 놀	4	20	10	50
유류성분(동·식물성 제외)	-	80	-	200

- 가 지역 : 논·밭·과수원·목장용지·임야·학교용지·하천·수도용지·공원·체육용지(수목·잔디 식생지)유원지·종교용지·사적지
- 나 지역 : 공장용지·도로·철도용지·잡종지

□ 토양환경 관리체계도



제 2장 토양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 내용

1. 개정법률

□ 개정이유

- 공장부지, 폐광지역등 토양오염 우심지역을 적극 조사·정화
 -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조사
 -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
-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 감리·감독

□ 개정법률 주요골자

- 시·도지사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동일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실

- 시하든 것을 토양오염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(제 5조 제 2항)
-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·양수하는 경우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 (제 10조 의 2 신설)
 -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등의 업무를 시·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이양 (제 11조 · 제 12조 및 제 26조의 2)
 - 시·도지사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로 하여금 토양정밀조사를 받게 하도록 함 (제 15조 제 1항 신설)
 -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오염원인자가 실시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리·감독할 수 있도록 함(제 19조 1항)
 -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(제 23조 제 3항 신설)
 -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근거규정 마련(제 23조 4 신설)

□ 주요개정내용

- 토양오염유발시설 : 토양오염유발시설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이원화
 - 토양오염유발시설: 토양오염물질을 생산·운반·저장·취급·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·장치·건물·건축물 및 장소등을 말한다
 -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: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유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

○ 토양오염도조사 : 지역망의 경우 측정망 대신에 관할구역내에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실태를 하여야 함

○ 손실보상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에 의해 손실을 입힌때는 보상조항에 토양관련전문기관도 추가

○ 토양환경평가 :

-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·양수 하거나 임대·임차인은 당해시설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다.

- 평가결과는 당시의 오염도 추정

- 토양환경평가의 항목·방법 및 그 절차는 환경부장관 고시

○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

-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내용, 토양오염방지계획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든 것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

○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

- 시·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치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명할수 있다→ ...기간을 정하여 당해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정도가 우려기준이내가 되도록 정화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○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

- 시·도지사는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
○ 오염토양개선사업

- 시·도지사는 대책지역에 대한 오염토양개선사업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를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감리자로 지정하여 가리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○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

-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오염원인자는 피해를 배상한다. 오염원인자가 2인이상 인 경우 피해발생 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대배상한다(기존).

-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오염원인자로 본다.

·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·유출시키거나 투기·방기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

·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·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자

·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자

·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, 파산에 의한 환가,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자

○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등

- 토양오염조사기관의 범위

지방환경관서, 국·공립연구기관,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,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

-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수행

· 토양정밀조사 · 토양환경평가 · 토양오염도검사 ·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·감독

-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등은 환경부령으로 정 함

-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등
 - 지정기준을 미달한때
 - 사위(詐僞)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때
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
 - 다른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
 -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때

제 2절 하위법령

1. 토양환경평가지침(안)

적용범위

-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있거나 설치되었던 부지 및 그 주변 지역
- 부지상황에 따라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조정가능

평가항목

- 법 제 2조에 규정한 토양오염물질로 한다.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양도인·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평가

평가방법 및 절차

1단계(기초조사)와 2단계(정밀조사)로 구분하여 시행

○ 1단계

- 자료조사 : 대상부지의 토양오염상태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
 - 기본자료(지적도, 지형도 , 토지건축대장등), 기타자료(누출검사자료, 항공사진등)
- 방문조사: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부지오염상태확인
 - 유발시설설치장소 확인 및 보관상태, 주변식생, 지형·지질

-청취조사: 소유자, 지역공무원 및 거주자들을 통해 오염상태확인

· 시설현황 , 폐쇄 또는 이전사항,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오염사고사례

- 평가의견

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를 평가하고 , 오염의 개연성이 인정 될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및 범위추정

- 보고서 작성

o 2단계(정밀조사)

대상부지의 오염도(오염물질의 종류, 오염범위등)를 분석·평가

-조사계획수립 : 시료채취 및 분석계획, 안전위생계획, 정도관리 계획

-조사활동

- 평가

· 토양오염물질인 경우 토양환경법 관련기준적용, 그 외 오염물질은 국제적 또는 외국기준적용

- 조사결과해석 : 오염원인분석·평가

- 보고서작성

II.토양오염물질의 확대 및 기준개선

확대 대상 오염물질

o 선정기준

- 국내에서 환경오염물질(수질, 대기, 폐기물)과 선진 외국에서 토양오염물질로 다수 설정

- 국내 토양·지하수조사결과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물질

- 국내에서 다량 제조·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

o 확대 대상물질

- TCE, PCE, 아연, 니켈, 불소

○ 토양오염물질 오염기준(안)

- 학계, 토양관련전문기관, 산업계 등 관련전문기관의 의견수렴, 전문가화회의 및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통해 기준조정

(단위:mg/kg)

오염물질	가 지역		나 지역	
	우려기준	대책기준	우려기준	대책기준
TCE	8	20	40	100
PCE	4	10	24	60
Zn	300	700	800	2,000
Ni	40	100	160	400
F	400	800	800	2,000

- 가 지역 : 논·밭·과수원·목장용지·임야·학교용지·하천·수도용지·공원·체육
용지(수목·잔디 식생지)유원지·종교용지·사적지
- 나 지역 : 공장용지·도로·철도용지·잡종지